의료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서

제1호[건　　명]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

제2호[적용범위]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구미시 1공단로 179)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호[업체요건]

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수집운반에 한함)

나.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해당폐기물 처리업자

제4호[계약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에 맞게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한다.

나. 폐기물처리업자의 업종구분과 영업의 내용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의 종류, 물량, 용역금액, 용역기간, 폐기물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처리장소, 처리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 운반 비용에 폐기물 상하차비를 포함한다.

제5호[폐기물 위•수탁사항]

가. 본 계약자는 폐기물을 지정된 수집운반차량으로 폐기물보관창고(장소포함)에서 폐기물처리업체로 주 2회 이상 법정수거 기한 내에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이 경우 상차를 포함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상기 “가”와 같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병원에서 지정하는 날짜 및 시간대에 폐기물보관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폐기물전량을 폐기물 처리업체로 운반 하여야한다.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상기 “가” 에서 “나”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추가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한다.

라.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운반차량 정보(차량번호, 차량용량)를 사전에 병원에 등록(변경포함)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병원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폐기물을 상차하고 반출하여야한다.(단, 등록된 차량이 고장으로 운반이 어려운 경우 유선으로 통지하고 대체차량으로 당일발생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마. 기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야하며 또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중 수집운반에 관한사항을 이행하여야한다.

제6호[폐기물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

가.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나. 기타 수탁폐기물의 인수·보관·처리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해당조문에 따라야 하며 또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제7호[통지의 의무 및 조치]

본 계약자는 행정처분(조·영업정지 등), 사고 등으로 수탁폐기물을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이를 즉시 본원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본원이 행하는 타 업체와의 계약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8호[안전사고 예방 및 책임]

본 계약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필요한 환경·안전·보건상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조치미비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제9호[불이행시 조치사항]

본 계약자가 계약기간 동 시방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및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 병원의 다음조치에 따라야한다

(1) 1회 적발 : 경고

(2) 2회 적발 : 계약해지

2020.03.26

의료폐기물추정발생량 : 130톤/년